



일본 「의용소방대 협력사업체 표시제도」에 대한 분석

이의평

전주대학교 소방안전공학과

Analysis of Volunteer Fire Brigade Office Symbol System in Japan

Lee, Eui Pyeong

Dept. of Fire Safety Engineering, Jeonju University

요 약

일본은 약 200만 명이었던 지역방재의 중핵적 존재인 의용소방대원의 수가 점점 감소하여 현재는 88만 명 수준으로 감소하여 이대로 가면 지역 방재체제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까지 있고, 사회경제의 발전에 따라 산업구조와 취업구조가 크게 변화하여 의용소방대원의 약 70%가 피고용자(봉급생활자)인 상황이다. 따라서 의용소방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봉급생활자가 의용소방대에 들어오기 쉽고 활동하기 쉬운 환경을 만들 필요가 있으며, 사업체의 의용소방대활동에 대한 이해와 협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일본 소방청은 의용소방대원을 고용한 사업체의 의용소방대활동에 대한 이해와 협력을 얻기 위해서 2006년도부터 의용소방대 활동에 협력하고 있는 사업체에 대해 「의용소방대 협력사업체 표시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제도 도입배경, 마크(표시증)교부 기준 등 운영실태에 대해 분석하여 소개한다.

1. 서 론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 의용소방대¹⁾는 광역소방체제로 바뀐 1992년 당시만 하더라도 읍면지역 등의 화재진압활동을 거의 도맡아 하였으나 광역소방체제가 자리 잡기 시작하면서 많은 읍면지역까지 관설소방기관이 설치되어 의용소방대가 맡았던 화재진압업무 등을 관설소방이 맡는 쪽으로 변화하였다²⁾. 관설소방이 보편화된 현재는 의용소방대는 직접 화재진화활동을 하지 않고 관설소방을 보조하는 수준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없지 않으며³⁾, 소방기본법 제31조 제1항에서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소방업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시·읍·면에 의용소방대(義勇消防隊)를 둔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법적으로도 관설소방을 보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방기본법을 보더라도 의용소방대는 단순히 소방업무를 보조하는 단체라고 생각하기 쉽고, 관설소방이 정착된 오늘날에 의용소방대가 할 일이 뭐가 있겠느냐고 반문할 수 있으며, 의용소방대가 관설소방을 보조하기 위해 있다면 보조하지 않더라도 관설소방의 운영에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인식될 수 있을 것이다. 평상시 소방기관의 운영실태에 한해서 고려한다면 의용소방대의 보조가 없더라도 소방기관의 운영에는 무리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관설소방이 우리나라보다 발전한 일본을 보면 의용소방대가 단순히 관설소방을 보조하는 것이 아니라 대규모재해 시 등에는 화재진화나 구조구급활동 등에 관설소방과 보조를 맞춰 지역방재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일본 소방청은 의용소방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여 시행하고 있으며⁴⁾, 이들 여러 정책 중 핵심정책이 「의용소방대 협력사업체 표시제도」로 2006년도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제도 도입배경, 마크(표시증)교부 기준 등에 대해 분석하여 소개한다. 일본은 의용소방대를 소방단(消防團)으로 표기하므로 이하에서 소방단으로 표기하기로 한다.

2. 「소방단 협력사업체 표시제도」의 분석

2.1 소방단협력사업체 표시제도 도입의 취지

전체 소방단원의 약 70%가 피고용자이므로 소방단 활동에 대한 깊은 이해와 협력을 얻기 위해서 2005년도에 「소방단과 사업소의 협력체제에 관한 조사검토회」를 설치하여 소방단과 사업체의 협력체제의 방안에 대해 검토하여, 사업체가 소방단활동에 협력하면 그 지역에 대한 사회공헌 및 사회책임으로 인정받아 해당사업체의 신뢰성 향상으로 연결될 것이고, 이렇게 되면 또한 그 지역의 방재체제도 한층 충실해질 수 있는 「소방단 협력사업체 표시제도」를 제안하였다. 이 제안에 따라 2006년도에 경제단체, 지방자치단체 등의 관계자들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소방단협력사업체 표시제도에 관한 검토회」를 개최하여 구체적인 제도의 틀을 마련하였다⁵⁾.

2.2 소방단협력사업체 표시제도의 실시 요강⁶⁾

이 요강은 사전에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국가가 시정촌에 있어서 요강의 예를 제시해 달라」는 요청(약 64%)이 많아서 「소방단 협력사업체 표시제도에 관한 검토회」에서 논의한 결과를 토대로 「시정촌 등의 소방단 협력사업체 표시제도 실시 요강」을 제정하였다. 이 요강은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표시증의 교부신청 및 추천), 제4조(인정기준), 제5조(심사), 제6조(표시증의 교부), 제7조(표시증의 표시), 제8조(표시증 교부정리대장의 비치), 제9조(유효기간), 제10조(인정의 취소), 제11조(협력사업소의 공표), 제12조(협력사업소의 표창), 제13조(소관), 제14조(기타), 부칙(시행일)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2조에서 사업체등, 소방단 협력사업체, 소방단 협력사업체 표시증, 기능별 소방분단, 소방단장등에 대해 용어정의를 하고 있으며, 사업체등이란 사업체 또는 기타 단체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는데, 해설란에서 「사업체등」에서 사업체란 민간사업체 등에 있어서 개개의 본점, 지점 등을 말하고, 기타 단체란 각종 학교, 각종 협동조합(농협, 수협 등), 특수법인(우정공사, 금융 公庫 등) 등에 있어서 개개의 본점, 지점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2.1 소방단협력사업체 표시제도의 목적

소방단원의 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또한 소방단원의 피고용화율이 약 70%인 현실에 비추어 사업체 등의 소방단 활동에 대한 깊은 이해와 협력이 불가결하다. 이를 위해

i 사업소는 기업 등을 말하며, 이하 '사업체'로 표기함

사업체 등의 종업원이 소방단에 입단하기 쉬운 환경을 만들고 소방단원이 된 종업원이 소방단 활동을 하기 쉬운 환경만들기 및 사업체 등이 보유하고 있는 방재력의 제공 등의 협력을 얻을 수 있는 경우는 해당 사업체 등(이하 협력사업체라 한다)에 대해 표시증을 교부하여 협력사업체가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있는 것을 사회적으로 평가함으로써 협력사업체의 신뢰성 향상에 연결되고, 소방단과 사업체 등과의 연계·협력체제가 한층 강화됨으로써 지역에 있어서 소방·방재체제의 충실강화를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2.2 실시주체 및 실시개시일

시정촌이 교부하는 표시증(이하 시정촌마크라고 한다)은 시정촌 및 소방본부가 실시요강 등을 정하여 실시하며, 실시개시일은 실시요강 등을 정한 날로 한다. 소방청이 교부하는 표시증(이하 소방청마크라고 한다)에 대해서는 소방청이 2007년 1월 1일부터 실시한다.

2.2.3 실시요령

시정촌은 소방청이 작성한 「시정촌 소방단 협력사업체 표시제도 실시 요강」를 참조하여 지역실정 및 과거의 표창실적 등을 토대로 실시요강 등을 책정하여 실시한다. 소방청은 「소방청 소방단협력사업체 표시제도 실시 요강」에 따라 실시한다.

2.2.4 표시대상 및 교부신청 등

표시증의 교부를 받는 대상은 사업체등 단위로 하며, 소방관계법령을 위반하고 있는 경우에는 표시증을 교부할 수 없다. 또한 표시증 교부 수속은 스스로 신청하는 외에 소방단장등이 추천할 수도 있다. 또한 소방단장등이 추천하는 경우에는 사업체 등 사무부담의 경감을 피하기 위해서 사업체등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2.2.5 인정기준

사업체등이 표시증의 교부를 받을 수 있는 인정기준에 대해서는 소방단활동을 한다고 하여 승진이나 승급 등에서 불리한 취급을 하지 않은 경우나 근무시간 중에 소방단활동(출동·훈련 등)을 할 때에 임금을 삭감하지 않는 등을 배려하고 있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는데, 소방단 협력사업체 표시제도에 관한 검토회의 사전에 설문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사업체 등이 확보하고 있는 단원 등을 전국 일률적으로 인정기준 중에 설정하는 것은 곤란하므로 시정촌의 실정에 따라 인정기준을 설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사업체의 종업원이 입단함으로써 소방단에 협력하고 있는 경우, 단원수의 인정기준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체 등의 규모·형태나 단원의 재직연수 등을 지역실정과 아울러 감안하여 인정기준을 설정하도록 하고 있다.

2.2.6 심사

심사에 임해서는 각 시정촌 사무부담의 경감도 고려하여 심사회의 설치는 특히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각 시정촌의 실정에 따라 서류심사 등으로 대응하면 충분한 것으로 하고 있다. 단, 소방단장등의 추천이 있는 경우의 심사에 대해서는 표시신청서를 활용하여 심사결과를 기록해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2.3.7 표시방법 및 표시유효기간

표시증은 전국 공통으로 규격을 정한 것이므로 사업체등 보기 쉬운 장소에 표시하는 외에 같은 비율로 확대 또는 축소하여 팸플릿, 포스터, 홈페이지 등 여러 매체에도 게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표시증의 표시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2년간으로 하며, 표시유효기간

중에 소방청 협력사업소 표시증의 교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교부 날로부터 2년간으로 한다. 또한 표시유효기간이 2년을 넘으려고 하는 경우는 사업체 등의 협력내용에 변경이 없고, 사업체 등이 계속하여 표시증의 표시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인정 및 표시의 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Figure1. 홈페이지 게재의 예

2.3.8 인정의 취소

사업체등이 인정기준을 만족하지 못할 때 협력사업체가 사업을 폐지 또는 휴지하였을 때, 거짓으로 기타 부정한 수단에 의거 표시증의 인증을 받았을 때 또는 기타 협력사업체로서의 표시가 적당하지 않을 때는 해당 인정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다.

2.3 소방단협력사업체 표시증 교부 실태⁷⁾

2011년 10월 1일 현재 소방단 협력사업체 표시 제도를 868시정촌ⁱⁱ⁾이 도입하고 있으며, 617시정촌이 표시증을 교부하고 있으며, 소방단협력사업체는 7,727개 사업체이며, 이 중에서 461개 사업체는 소방청에서 표시증을 교부받았다.

3. 결 론

일본 소방청에서는 의용소방대 운영을 활성화하고 의용소방대 입대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러한 여러 정책 중 중점 시책의 하나인 의용소방대 협력사업체 표시 제도에 알아보았다. 의용소방대 협력사업체 표시제도 정책은 우리나라 의용소방대를 활성화대책을 수립하는데도 참고가 될 수 있는 정책인 만큼 향후 일본 의용소방대 협력사업체 표시제도 정책 및 운영실태 등에 대한 보다 체계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1. 소방방재청, "한국소방행정사", p.83(2009).
2. 전국대학 소방학과 교수협의회, "소방학개론", 동화기술, p.24(2008).
3. 박찬석, 윤명오, "의용소방대장 리더십 유형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 리더에 대한 신뢰를 매개변수로-",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제25권 제2호, p10(2011).
4. 이의평, "일본 의용소방대 활성화 정책의 분석",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제25권 제4호, pp.64-73(2011)
5. 消防団協力事業所表示制度に關する檢討會,"「消防団協力事業所表示制度に關する檢討會」報告書", p.4(2006).
6. <http://www.fdma.go.jp/syobodan/welcome/company/notice/index.html>
7. <http://www.fdma.go.jp/syobodan/welcome/company/index.html>

ii 일본 지방자치단체는 2011년 4월 1일 현재 47都道府縣, 23區(東京), 785市, 754町, 184村으로 구성되어 있다.